

유의할 사항은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박종복/변호사

<질문>

직장 동료 직원으로부터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본인이 꼭 출석하여야 하는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다.

<답변>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로 인하여 증가된 소송비용을 부담받게 되거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원의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국한되는 것으로 귀하가 직장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여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증인으로 출석하면 증언을 하기에 앞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반기로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의 선서서를 낭독해야 하고 이러한 선서를 한 다음에 기억에 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증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증인이 증언 당시 그것을 진실로 믿고 그대로 증언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증인신문의 방식은 그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주신문을 하고, 주신문이 끝나면 다음으로 상대방의 반대신문이 있고,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뒤에 보충신문을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문도 중에라도 스스로 신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신문 내용은 증인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미리 이것을 증인신문사항 형식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므로 귀하는 이러한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받아 검토하면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볼 수 있으며 필요한 관계서류와 대조하여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또 법원에서 요구하는 출석시간보다 조금 일찍 출석하여 앞에서 재판받는 사건을 미리 방청하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증인신문에 들어가 질문을 받게되면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분명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으면 다시 한 번 질문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끔 증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간략하게 대답하면 될 것이다.

종종 상대방 당사자가 반대신문 도중 증인을 화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이성을 잃고 답변을 하다가는 오히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인은 오직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신분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과 도장도 지참하여야 한다.